

학 교 법 인 정 석 인 하 학 원 이 사 회 회 의 록

회의 소집 통보일	2023년 12월 5일
이사 정수 15인	재적 이사 15인

1. 일 시 : 2023년 12월 22일(금) 14:00

2. 장 소 : 대한항공 서소문빌딩 12층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구 분	인원	성 명
참석 이사	12	현정택, 서용원, 류경표, 이화석, 김광재, 유승남, 박기찬, 조명우, 허희영, 김성찬, 박인채, 이수근
불참 이사	3	조원태, 유재만, 조성배
참석 감사	1	이성기
불참 감사	1	배홍기

4. 안 건

- (1) 정석인하학원 임원(일반이사) 선임의 건
- (2) 정석인하학원 임원(감사) 선임의 건
- (3)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신규 임용의 건
- (4)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 임용의 건
- (5)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면직의 건
- (6) 한국항공대학교 전임교원 신규 임용의 건
- (7) 한국항공대학교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 임용의 건
- (8)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임교원 신규 임용의 건
- (9)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 승급 임용의 건
- (10) 김포메디컬캠퍼스 사업계획의 건
- (11) 정석인하학원 정관 변경의 건
- (12)
- (13)
- (14) 이사회결과조서 및 이사회회의록 각 장간 간서명 임원 호선

이성기

이화석

서용원

5. 회의내용

이 사 장 : 이사회 개회 및 상정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발표하고 14:00 개회를 선언하다. 1호 안건인 정석인하학원 임원(일반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다. 본 안건은 박인채 이사 본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척 사유가 됨을 설명한 후, 회의장에서 퇴실할 것을 주문하고 정석인하학원 임원(일반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다.

< 박인채 이사 회의실에서 퇴실 >

□ 정석인하학원 임원(일반이사) 선임 계획

- 선임 배경 : 현 박인채 이사 임기 만료
- 선임 이사

직위	성명	생년월일	현 임기	중임 임기	비고
이사	박인채	1959.	2020.3.18.~2024.3.17.	2024.3.18.~2028.3.17.	중임

서 용 원 이사 : 박인채 이사의 임기가 2024.3.17.부로 만료되어 후임 선임이 필요한 상황으로, 박인채 이사는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법인과 학교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사(일반이사)로 선임(중임)할 것을 제의하다.

이 화 석 이사 : 서용원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김 광 재 이사 : 이화석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참석 이사 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1호 안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회 임원(일반이사)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표하다. (표결 결과 : 찬성 11, 반대 0) 박인채 이사의 입실을 요청하다.

< 박인채 이사 회의실로 입실 >

이어서 2호 안건인 정석인하학원 임원(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다. 본 안건은 이성기 감사 본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의장에서 퇴실할 것을 주문하고 정석인하학원 임원(감사)선임의 건을 상정하다.

<이성기 감사 회의실 퇴실 >

이영

이화석

김광재

□ 정석인하학원 임원(감사) 선임의 건

- 선임 배경 : 이성기 감사 임기만료
- 선임 이사

직위	성명	생년월일	현 임기	중임 임기	비고
감사	이성기	1977.	2021.2.4.~2024.2.3.	2024.2.4.~2027.2.3.	1차례 중임

서 용 원 이사 : 이성기 감사의 임기가 2024.2.3.부로 만료되어 후임 감사를 선임하는 건으로 이성기 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이며 감사로 재임하는 동안 법인과 학교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사로 선임(중임)할 것을 제의하다. 감사의 경우 1차례 중임이 가능함을 부연 설명하다.

이 화 석 이사 : 서용원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이 수 근 이사 : 이화석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참석 이사 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2호 안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임원(감사)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표하다. (표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이성기 감사의 입실을 요청하다.

<이성기 감사 회의실 입실 >

이어서 3호 안건인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건을 상정하다.

□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계획

- 신규임용 예정 인원 : 명
- 신규임용 일자 : 2024.03.01. 부
- 신규임용 대상자 및 임용내용

[정년트랙(일반)]

이 수 근

이 화 석

이 수 근

이름

이화석

제 제 영

조 명 우 이사 : 전임교원 신규임용 근거, 정년트랙(일반/임상) 및 비정년트랙 교원 단계별 심사 과정, 임용 후 교원확보율 등에 대하여 설명하다.

서 용 원 이사 : 이사회 산하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신규임용 대상자의 업적 및 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금번 2024학년도 1학기에 적격자가 없어 미충원한 분야는 향후 신규 교원 초빙절차를 거쳐 우수한 교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건은 인사/운영위원회 검토의견을 참고한 학교의 제청(안)과 같이 임용하는 것으로 승인할 것을 제의하다.

김 광 재 이사 : 서용원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이/서

이/서

이/서

유 승 남 이사 : 김광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참석 이사 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3호 안건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건은 정년트랙(일반) 명, 정년트랙(임상) 명, 비정년트랙 명, 계 명을 임용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공표하다. (표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이어서 4호 안건인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 임용의 건을 상정하다.

□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임용 계획

- 재계약/승진 예정 인원 :
- 승진 예정 인원 :
- 재계약 예정 인원 :
- 임용 일자 : 2024.03.01. 부
- 재계약, 승진임용 내용

이승남

이화석

이리영

이씨

이환서

이원영

이름

이화씨

허필영

조명우 이사 :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 관련 근거, 평가항목, 심사 경위와 심사결과 및 재계약, 승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서용원 이사 : 이사회 산하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승진임용 대상자의 업적 및 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학교의 임용제청이 적절하다고 설명하다. 본 건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임용의 건은 인사/운영위원회 검토의견과 같이 임용하는 것으로 승인할 것을 제의하다.

박인채 이사 : 서용원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조성배 이사 : 박인채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참석 이사 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4호 안건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승진, 재계약 임용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표하다. (표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이어서 제5호 안건인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면직의 건을 상정하다.

☐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면직 계획

○ 면직 예정 인원 : 1명

○ 면직 일자 : 2024.02.29. 부

○ 면직 대상자 및 임용내용

번호	학과(부)	직급	성명	면직일	비고
1					

조명우 이사 : 전임교원 면직 관련 근거, 면직 계획에 대해 설명하다.

이승우

이화석

이재영

서 용 원 이사 : 이사회 산하 인사/운영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면직 대상자에 대한 평가가 현 규정대로 적합하게 시행하고 적정하였으며, 상정된 내용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면직의 건은 인사/운영위원회 검토의견과 같이 승인할 것을 제의하다.

박 인 채 이사 : 서용원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류 경 표 이사 : 박인채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참석 이사 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5호 안건 인하대학교 전임교원 면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표하다. (표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이어서 제6호 안건 한국항공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건을 상정하다.

□ 한국항공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계획

- 신규임용 예정 인원 : 명 (정년트랙 교원 명, 비정년트랙 교원 명)
- 신규임용 일자 : 2024.03.01. 부
- 신규임용 대상자 및 임용내용

[정년트랙]

이 승

이화석

정리영

허 회 영 이사 : 전임교원 신규임용 근거, 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 교원 단계별 심사 과정, 임용 후 교원확보율 등에 대하여 설명하다.

서 용 원 이사 : 이사회 산하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신규임용 대상자의 업적 및 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고 설명하고, 한국항공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건은 인사/운영위원회 검토의견과 같이 임용하는 것으로 승인할 것을 제의하다.

이승우

이화석

허 회 영

이 수 근 이사 : 서용원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박 인 채 이사 : 이수근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참석 이사 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6호 안건 한국항공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건은 원안대로 임용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공표하다. (표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이어서 제7호 안건 한국항공대학교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임용의 건을 상정하다.

□ 한국항공대학교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임용 계획

○ 승진 예정 인원 : 명

○ 재계약 예정 인원 : 명 (정년트랙 명, 비정년트랙 명)

○ 임용 일자 : 2024.03.01. 부

이 수 근

이화석

최희영

허 회 영 이사 :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 관련 근거, 평가항목, 심사 경위와 심사 결과 및 재계약, 승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서 용 원 이사 : 이사회 산하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승진임용 대상자의 업적 및 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학교의 임용제청이 적절하다고 설명하다. 본 건 한국항공대학교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임용의 건은 인사/운영위원회 검토의견과 같이 임용하는 것으로 승인할 것을 제의하다.

이 화 석 이사 : 서용원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류 경 표 이사 : 이화석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참석 이사 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7호 안건 한국항공대학교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 임용의 건이 원안대로 임용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공표하다. (표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이어서 제8호 안건인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건을 상정하다.

□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 계획

- 신규임용 예정 인원 : 명 (정년트랙 명, 비정년트랙 명)
- 신규임용 일자 : 2024.03.01.부 및 2024.02.01.부(신설학과 임용 대상자)
- 신규임용 대상자 및 임용내용

이 사

이 화 석

허 회 영

김 성 찬 이사 : 전임교원 신규임용 근거, 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 교원 단계별 심사 과정, 임용 후 교원확보율 등에 대하여 설명하다. 신설학과 신규임용 대상자 3명에 대하여 2024.2.1.부 신규임용을 요청하다.

서 용 원 이사 : 이사회 산하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신규임용 후보자별 업적 및 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고 설명하고,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건은 인사/운영위원회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정년트랙 1명, 비정년트랙 2명을 임용하고 신설학과 신규임용 대상자 3명에 한하여 2024.2.1.부 신규임용 승인할 것을 제의하다.

이 수 근 이사 : 서용원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박 인 채 이사 : 이수근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수 근

이화석

서용원

이 사 장 : 참석 이사 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8호 안건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공표하다. (표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이어서 제9호 안건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 승급 임용의 건을 상정하다.

□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 승급임용 계획

- 승진 예정 인원 :
- 승급 예정 인원 :
- 재계약 예정 인원 : (정년트랙 , 비정년트랙)
- 임용 일자 : 2024.03.01. 부

이 사 장

이 화 석

이 립 영

이승)

이화석

정피영

김 성 찬 이사 : 전임교원 승진, 승급, 재계약 관련 근거, 평가항목, 심사 경위와
심사 결과 및 재계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서 용 원 이사 : 이사회 산하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임용 후보자별 업적 및
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학교의 임용제청이 적절하다고 설
명하고, 본 건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임교원 승진, 승급, 재계약 임용
의 건은 인사/운영위원회 검토의견과 같이 임용하는 것으로 승인
할 것을 제의하다.

이 화 석 이사 : 서용원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류 경 표 이사 : 이화석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참석 이사 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다른 의견이 없
음을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9호 안건 인하공업
전문대학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 승급 임용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공표하다. (표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이어서 제10
호 안건 김포메디컬캠퍼스 사업계획의 건을 상정하다.

이성

이화석

류경표

□ 김포메디컬캠퍼스 사업계획(안)

○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위치		김포시 사우동 553-1	
병상 규모		700병상	
대지 면적		90,000㎡ (27,225평)	
총 사업비 (투자규모)	병원 건립	○ 병원 건립비용	5,590억원
		- 공사비 (연면적 47,493평)	5,000억원
		- 의료기기 등	590억원
	대학캠퍼스 건립	○ 초기 운영비 (3년)	1,000억원
		- 공사비 (연면적 4,800평)	320억원
총계			6,910억원

※ 김포도시관리공사 제출(2023.11.14.)

○ 건축 계획

구분		내용	
건폐율/용적율		60%이하 / 240% 이하	
병원	건축규모	157,000㎡ (47,493평) [지하 5층, 지상 14층]	
	층별 배치	지상	1F~4F 외래/검사, 5F 수술실 6F~13F 입원병동, 14F 공조실
		지하	B1 검사/편의시설/장례식장 B2~B5 주차장/기계/공조실
	공사비	5,000억원	
대학	건축규모	15,874㎡ (4,800평) [3개동]	
	동별 배치	A동	교육시설 (강의실, 연구소, 교수실)
		B동	Open Campus (평생교육원 등)
		C동	교육지원시설 (도서관)
	공사비	320억원	

○ 자금 조달 계획

구 분			김포도시관리공사 (주)풍무역세권개발	(학)정석인하학원	계
병원	공사비	공사지원금	1,600억	-	1,600억
		재단/그룹지원	-	1,600억	3,400억
		외부차입 (금융권 조달)	-	1,800억	
		계	1,600억	3,400억	5,000억
	운영비/장비		-	1,590억	1,590억
	합계		1,600억	4,990억	6,590억
대학	캠퍼스 조성비		-	320억	320억
총계			1,600억	5,310억	6,910억

※ 김포도시관리공사 및 (주)풍무역세권개발의 1,600억원 지원을 전제로한 자금조달계획임

이

이화석

이정영

조명우 이사 : 김포메디컬캠퍼스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추진경과, 사업개요, 건축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김포메디컬캠퍼스 추진과 관련하여,

2021년 제3차 이사회(2021.4.29. / 김포시 제안 메디컬캠퍼스 관련 보고),
2022년 제1차 이사회(2022.2.8. /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MOA체결(안)의 건)

두 차례 정석인하학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을 부연 설명하다.

이화석 이사 : 본건 김포메디컬캠퍼스 사업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추진하되,
김포도시관리공사 측과 합의된 바와 같이 김포도시관리공사 및
(주)풍무역세권개발의 공사지원금 1,600억원 지원을 전제로 승인을 제의
하다.

박인채 이사 : 이화석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이수근 이사 : 박인채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장 : 참석 이사 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도의 의견이 없
음을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10호 안건 김포
메디컬캠퍼스 사업 계획 심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이화석 이사의 제의와 같이 김포도시관리공사 및 (주)풍무역세권개발
의 1,600억원 지원을 전제로 총 5,310억원의 자금조달계획(안)의
승인을 공표하다. (표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이어서 제11호
안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 변경 건을 상정하다.

□ 정석인하학원 정관 변경(안)

- 상위법(사립학교법 등) 개정 반영 : 청렴의무 및 행동강령 제정
- 의료원 소속 직원의 징계심의 위원회 설치 : 의료원 현행 절차 명시화
- 용어정비 등

현행	변경안	비고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u>중등보통교육, 고등보통교육,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 및 고등교육</u> 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u>참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u>	-인재양성의 목표 추가 -교육기본법 제9조 반영
제5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각급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u>9인</u> 의 교원 또는 <u>참여</u> 로 구성한다.	제5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각급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u>9명</u> 의 교원 또는 <u>직원</u> 으로 구성한다.	-정관(2022.6.24.)변경에 따라 직원의 직급 “참여, 부참여” 등 용어를 삭제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반영

이수근

이화석

허필영

제74조(자격) 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u>사무직원(기능직, 기술직 및 고용원등을 포함한 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u>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u>피한정후견인</u>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4조(자격) ① <u>사무직원(기술사무직, 행정사무직 및 기능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다.</u>	-일반직원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10조의 준용
제79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u>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u>	제79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u>일반직원의 징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단, 의료원 소속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는 의료원 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u>	-의료원 소속 일반직원 징계 절차는 의료원 소속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현행 절차를 명시화
제80조(법인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u>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u> ② <u>법인사무국에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u>따로 규칙으로 정한다.</u>	제80조(법인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u>법인사무국을 둔다.</u> ② <u>법인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어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u> ③ <삭 제>	-법인의 직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함
제2절 인하대학교 제83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지원처, 사무	제2절 인하대학교 제83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지원처, 사무	-정관(2022.6.24.)변경

이 문

이 화 석

서 지 영

처, 기획처, 연구처, 입학처, 대외협력처, 국제처 및 정보통신처를 둔다. ② <u>처장 및 실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u> 또한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u>부참여로 보한다.</u> ③ <u>각 처·실의</u>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처, 기획처, 연구처, 입학처, 대외협력처, 국제처 및 정보통신처를 둔다. ② <u>처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u> 또한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u>직원으로 보한다.</u> ③ <u>각 처의</u>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따라 직원의 직급 “참여, 부참여” 등 용어를 삭제함 -직책, 직급 명칭등 명확화 · 처장 및 실장 → 처장 · 참여, 부참여 → 직원 · 각 처·실의 → 각 처의
제84조(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교수 또는 <u>참여로 보한다.</u>	제84조(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교수 또는 <u>직원으로 보한다.</u>	-정관(2022.6.24.)변경에 따라 직원의 직급 “참여, 부참여” 등 용어를 삭제함
제85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② 부원장 및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실장은 <u>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	제85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② 부원장 및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실장은 <u>직원으로 보한다.</u>	-정관(2022.6.24.)변경에 따라 직원의 직급 “참여, 부참여” 등 용어를 삭제함
제87조(정석학술정보관) ① 정석학술정보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u>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	제87조(정석학술정보관) ① 정석학술정보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u>직원으로 보한다.</u>	-정관(2022.6.24.)변경에 따라 직원의 직급 “참여, 부참여” 등 용어를 삭제함
제88조(의료원) ③ 의료원에는 부속병원, 기획조정실, 의생명연구원을 두고 부속병원 산하에 진료부, <u>경영부</u>를 둔다. ④ <u>부속병원장과 진료부원장, 의생명연구원장은 교수로 보하고, 경영부원장, 기획조정실장은 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u>	제88조(의료원) ③ 의료원에는 부속병원, 기획조정실, 의생명연구원을 두고 부속병원 산하에 진료부, <u>행정부</u>를 둔다. ④ <u>부속병원장과 진료부원장, 의생명연구원장은 교수로 보하고, 행정부원장, 기획조정실장은 교수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	-정관(2022.6.24.)변경에 따라 직원의 직급 “참여, 부참여” 등 용어를 삭제함 - 부서명 변경 : 경영부 → 행정부 - 부속병원장 및 주요보직자는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함
제3절 한국항공대학교 제91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연구협력처, 입학처를 둔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사무처장은 <u>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u>	제3절 한국항공대학교 제91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연구협력처, 입학처 <u>및 국제교류처</u>를 둔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사무처장은 <u>직원으로 보한다.</u>	-조직개편 반영 등

제93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는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u>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	제93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는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u>직원으로 보한다.</u>	-정관(2022.6.24.)변경에 따라 직원의 직급 “참여, 부참여” 등 용어를 삭제함
제95조(중앙도서관) ① <u>중앙도서관</u>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95조(학술정보관) ① <u>학술정보관</u>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부속기관 명칭 변경 반영
제96조(비행교육원) ① 비행교육원에 <u>수색 비행훈련원과 정석 비행훈련원</u>을 두며 비행교육원에 <u>원장 1인, 부원장 1인</u>을 둔다. 원장 및 부원장은 부교수(조종실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비행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한다.	제96조(비행교육원) ① 비행교육원에 <u>비행훈련원</u>을 두며, <u>비행교육원에 원장 1명 및 각 비행훈련원에 부원장</u>을 둔다. 원장 및 부원장은 부교수(조종실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비행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한다.	- 비행교육원 : 수색비행훈련원, 정석비행훈련원, 울진비행훈련원 운영 중임
제4절 인하공업전문대학 제100조(하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기획처, 교무처, 사무처, 입학학생처 및 취업지원처를 둔다. ② 각 처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u>참여로 보한다.</u> 또한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u>참사 이상으로 보한다.</u>	제4절 인하공업전문대학 제100조(하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기획처, 교무처, 사무처, 입학학생처 및 취업지원처를 둔다. ② 각 처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u>직원</u>으로 <u>보한다.</u> 또한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u>직원</u>으로 <u>보한다.</u>	-정관(2022.6.24.)변경에 따라 직원의 직급 “참여, 부참여” 등 용어를 삭제함
제101조(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 전문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교수, 부교수 또는 <u>참여로 보한다.</u>	제101조(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 전문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교수, 부교수 또는 <u>직원</u>으로 <u>보한다.</u>	-정관(2022.6.24.)변경에 따라 직원의 직급 “참여, 부참여” 등 용어를 삭제함
제102조(부속기관) ① 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u>참사 이상 또는 계약직 직원</u>으로 <u>보한다.</u>	제102조(부속기관) ① 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u>또는 직원</u>으로 <u>보한다.</u>	

제103조(도서관) ① 전문대학 도서관의 관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u>참사 이상으로 보한다.</u>	제103조(도서관) ① 전문대학 도서관의 관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u>직원으로 보한다.</u>	
제5절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제105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u>부참사로 보하되</u> ,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제105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u>직원으로 보하되</u> ,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제107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u>부참사로 보하되</u> ,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제107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u>직원으로 보하되</u> ,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절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제109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u>주사로 보하되</u> ,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절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제109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u>직원으로 보하되</u> ,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128조 <신 설 > 제129조 <신 설 >	제10장 보칙 제128조(청렴의무) <u>법인의 임직원 및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129조(행동강령 준수) ① <u>법인의 임직원 및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28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 가. 법인 또는 각급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나. 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②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및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청렴의무) 반영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사학기관 행동강령) 반영

	③ 그 밖에 제128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④ 상기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각급 학교에서는 행동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모든 교직원은 해당 학교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u>부 칙 (개정 2023. 12.22.)</u> <u>(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u>													
【별표 2】 1. 인하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table> <tr> <td>총 계</td> <td>310 명</td> </tr> <tr> <td>행정직 계</td> <td>213 명</td> </tr> <tr> <td>기술사무직 계</td> <td>97 명</td> </tr> </table>	총 계	310 명	행정직 계	213 명	기술사무직 계	97 명	【별표 2】 1. 인하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table> <tr> <td>총 계</td> <td>310 명</td> </tr> <tr> <td>행정직 계</td> <td>213 명</td> </tr> <tr> <td>기술사무직 및 <u>행정사무직</u> 계</td> <td>97 명</td> </tr> </table>	총 계	310 명	행정직 계	213 명	기술사무직 및 <u>행정사무직</u> 계	97 명	- 일반직원 직종 개편 반영(행정사무직 신설)
총 계	310 명													
행정직 계	213 명													
기술사무직 계	97 명													
총 계	310 명													
행정직 계	213 명													
기술사무직 및 <u>행정사무직</u> 계	97 명													

이 화 석 이사 : 정석인하학원 정관 변경 건은 사립학교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청렴의무 등 행동강령 제정, 의료원 소속 직원 징계심의 위원회의 현행 절차 명시화, 용어정비 등을 변경하는 건이라고 설명하다.

서 용 원 이사 :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의하다.

허 회 영 이사 : 서용원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유 승 남 이사 : 허회영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참석 이사 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11호 안건 정석인하학원 정관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표하다. (표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이어서 제12호 안건을 상정하다.

이 승

이화석

허회영

이수민

이화석

정필영

이명

이화서.

이필영

박 인 채 이사 :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여,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금일 심의한 안건 중 제12,13호 안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할 것을 제의하다.

유 승 남 이사 : 박인채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김 성 찬 이사 : 유승남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참석 이사 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13호 안건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원 징계회부 및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표하다. (표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이어서 제14호 안건 이사회의결과조서 및 이사회회의록 각 장간 간 서명 임원 호선의 건을 상정하다.

박 인 채 이사 : 이사회의 결과조서 및 이사회회의록 각 장간 간 서명 임원으로 허회영 이사, 이화석 이사, 이성기 감사를 선출할 것을 제의하다.

이 수 근 이사 : 박인채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유 승 남 이사 : 이수근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참석 이사 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사회의 결과조서 및 이사회회의록 각 장간 간 서명 임원 호선 건은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허회영 이사, 이화석 이사, 이성기 감사가 간 서명 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공표하고 (표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폐회를 선언하다.

17:20 폐회하다.

2023.12.22.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수근

이화석

허회영

이사장 현 정택

현정택

이 사 서 용 원

서용원

이 사 류 경 표

류경표

이 사 이 화 석

이화석

이 사 김 광 재

김광재

이 사 유 승 남

유승남

이 사 박 기 찬

박기찬

이 사 조 명 우

조명우

이 사 허 희 영

허희영

이 사 김 성 찬

김성찬

이 사 박 인 채

박인채

이 사 이 수 근

이수근

감 사 이 성 기

이성기